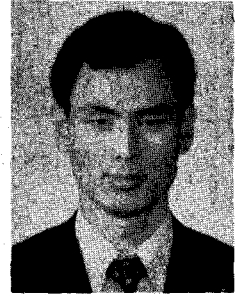


축산소득의 소득세 확정신고

5 월은 81년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각 양측가들이 별도로 경리직원 또는 세무고문을 두고 세법 소정의 장부조직을 하여 기장에 의거해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안되겠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여 정부 추계 결정을 받거나 기타 세금 문제에 별로 접해보지 못한 양측가들에게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에 즈음하여 축산업과 관련한 소득세 신고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다.



이 규 복
(용성사료<주>경리부차장)
전국세청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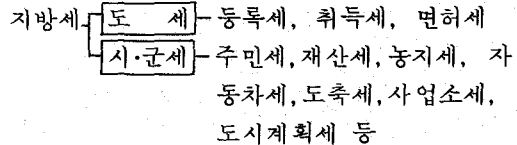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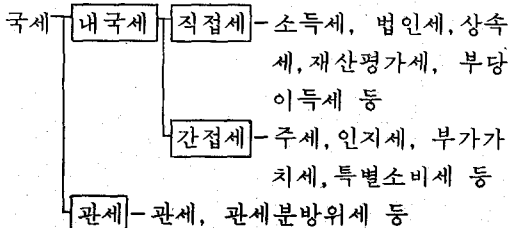
목 차

- | | |
|---------------------|----------------------------|
| (I) 과세 주체로 본 세금의 종류 | 3. 실지조사 결정 |
| 1. 세금의 분류 | 4. 추계조사 결정 |
| 2. 소득세와 종합소득 과세 | (IV) 소득세신고 납부와 세액계산 예시 |
| (II) 축산업의 종류 | 1. 신고납부 요령 그 세액계산 예시 |
| (III) 소득세 결정의 유형 | (V) 기타 세무 참고 사항 |
| 1. 과세표준 확정신고 결정 | 1. 축산업관련 개정세법 개요 |
| 2. 세면조사 결정 | 2. 소득표준율 등 농가 부업적에 축산업의 범위 |

(I) 과세주체로 본 세금의 종류

1. 세금의 분류

세금의 분류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과세권자 주체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국세는 국가 기관에서 지방세는 각 지방행정 기관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통상 국세중내국세를 부과하는 기관은 각 세무서장이며 관세는 세관장이 되겠으며 지방세는 각 시·도·군청 특별시와 직할시 그리고 구청등에서 부과 징수하게 된다.

2. 소득세와 종합소득과세

국세의 내국세중 직접세에 속하는 소득세

는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과세된다.

- 소득세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기타소득을 종합하
여 과세
 - 퇴직소득 → 직장등에 근무하던 봉
급생활자등이 퇴직시 받
는 소득에 과세
 - 양도소득 → 부동산등 자산의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
 - 산림소득 →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

위와 같이 축산업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
는 6가지 소득의 하나인 사업소득을 발생하
게 하는 사업의 여러종목중 하나인 것이다.

(II) 축산업의 종류 (소득세법 시행령 29조)

1. 낙농 양계 조류사육업 누에 및 꿀벌치기
와
2. 소, 말, 돼지, 양, 염소, 토끼, 친칠라,
밍크, 사슴, 기타 특수동물 생산업 등.

(III) 소득세결정의 유형

소득세 결정 유형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는데 해당자는 본인이 어느 유형에 속해 있
나를 정확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1. 과세표준 확정신고 결정(법117조)

가) 자동부과율에 의한 결정

① 대상자

ㄱ. 직전년도 : 부동산소득 총수입금
액이 600만원 이하자.

ㄴ. 직전년도 : 사업소득 총수입 금
액이 2,400만원 이하자 (보관업, 대리,
중개, 위탁판매 운송주선 및 도급업은
600만원 이하자)

② 요건

ㄱ. 2년간 정상적인 계속사업자

ㄴ. 자동부과율(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율) 이상으로 소득금액을 신고
한자.

(1)의 대상자로 (2)의 요건을 갖춘소득
금액 신고자는 신고대로 결정될 수 있다.

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율에 의한 결정

① 대상자

직전년도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과 사업소
득 총수입금액이 자동부과율에 의한 결정 대
상자의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다음의 요
건을 갖추었을 경우는 신고대로 결정될 수 있다.

② 요건

ㄱ. 2년간 실지조사 또는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자.

ㄴ. 2년간 신고과세 표준금액과 정
부결정 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이
5% 미달자

ㄷ. 2년간 계산서 및 지급조서제출
비율이 85% 이상인 자.

ㄹ. 신고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직
전년도대비 일정율이상 (국세청장
이 정함) 신고한자.

ㅁ. 신고소득금액이 신고소득 기준
율(국세청장이 정함) 이상인자.

2. 서면조사 결정(법119조)

가) 녹색신고 결정 : 신고한 서류에 의거
서면심리로 결정하는 방법

① 대상자 : 녹색신고자로 조정 계산서
첨부한 자.

②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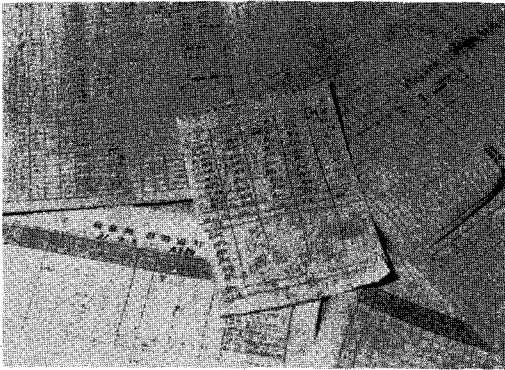
ㄱ. 2년간 결정과세표준액과 신고
과세표준액과의 차액이 10%미달

ㄴ. 2년간 계산서 및 지급조서제출
비율이 85%이상

ㄷ. 녹색신고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

ㄹ. 승인이 취소된지 2년이상 경과된
자(기존 녹색신고자)

나) 신고기준율에 의한 결정 : 신고한 서
류에 의거 서면심리 결정



△ 농가의 간이 기장

- ① 대상자 : 직전년도 부동산소득 총수입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자동부과율에 의한 결정 대상자의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조정계산서(공인회계사 세무사작성) 첨부자.
- ② 요건 : 신고수입 금액과 신고소득 금액이 신고기준(국세청장이 정함) 이상인자.

다) 국세청장이 확인 또는 지정하는 자의 서면조사 결정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는 신고된 서류에 의거 서면심리로 결정된다.

- ① 군 판납만 영위하는 사업자로 수입금액을 국세청장이 확인한다.
- ② 사업소득자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자료보고등 의무이행 정도를 감안 특별히 성실하다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3. 실지조사 결정(법118조)

비치 기장된 제장부와 증빙서류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사업자로 기장된 장부와 증빙에 의거 실지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4. 추계조사 결정(법120조)

비치기장된 장부가 없거나 제증빙등이 부실하여 상기결정방법(과세표준 확정신고, 서면조사, 실지조사결정)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매년 정부에서 발표)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Ⅳ)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세액의 계산예시(81년기준 축산업단일 사업소득자)

1. 신고 및 납부요령

가) 신고납부기간 : 82년 5월 1일 ~ 82년 5월 31일

나) 대상자 : 81년도중 축산업 소득이 있는 양축가(단,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될 경우는 신고할 필요 없음)

- ① 소득금액
 - 기장하는 경우 : 총 수입금액 - 사육원가 일반관리비등 총 비용
 - 기장하지 않는 경우 : 총수입금액 × 소득표준율

② 소득공제사항

- ㄱ. 기초공제 300,000원
- ㄴ. 배우자공제 300,000원
- ㄷ. 부양가족공제 1인당 240,000원
- ㄹ. 장해자공제 1인당 120,000원
(장해자가 공제대상배우자 또는 가족에 해당될 경우 중복공제가능)

다) 신고납부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신고센터, 시중은행, 우체국

라) 제출서류

- ① 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부
- ② 확정신고 소득금액 명세서 2부
- ③ 소득공제사항 명세서 1부
- ④ 주민등록표 등본 1부(전년도 제출 후 변동사항 없으면 제출할 필요 없음)
- ⑤ 세액감면 신청서 1부(축산업 감면 해당자 제출)

- ⑥ 복식기장 의무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필히 제출해야됨 (제출치 않으면 무신고 간주)
- ⑦ 녹색신고 및 서면조사결정 대상자는 세무조정 계산서(공인회계사, 세무사작성)
- ③ 기타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각종 명세서 (해당될 경우만)

2. 세액계산 예시(축산업 단일소득의 경우)

조건 : • 기장한 경우 (실지조사)

총수입금액 150,000,000원
 사육원가 및 일반관리등 제경비 133,500,000원
 순이익 (소득금액) 16,500,000원
 (150,000,000원 - 133,500,000원)

• 기장등 증빙서류 없는 경우 (추계조사결정)

총수입금액 150,000,000 (세금계산서등 자료에 의거 세무서 확인된 금액)

추계소득 16,500,000 (150,000,000 × 11%)

- 업 종 : 양계 (81년도 소득 표준을 1억원 이상으로 11%)
- 부양가족 (공제대상) 3인. 배우자 있음.
- 기납부세액 : 제 1기 중간예납세

소득세 540,000

방위세 108,000

: 제 2기 중간예납세

소득세 540,000

방위세 108,000

사업개시 5년째 (조세감면규제법 제4 조의 8 제 1항 1호에 의거 감면신청 경우) 신고서는 단일소득자 용으로 하고 기장을 했을 경우는 녹색으로 인쇄된 신고서로 기장이 없을 시는 (추계결정) 흑색으로 인쇄된 신고서를 사용한다.

가) 소득세액의 계산

① 16,500,000원...결정소득금액 (기장

의 경우 가장 소득금액 기장이 없을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소득 표준율을 곱합니다)

② 1,320,000원...소득공제 (기초300,000원 배우자300,000원, 부양가족 240,000 × 3인)

② 15,180,000원...과세표준 (결정소득금액 - 소득공제)

(×) 40% (누진공제액 2,175,000원)...종합소득 기본세율표 참조

③ 3,897,000원...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계급별 기본세율 40%를 곱하여 누진공제액 2,175,000원을 공제함)

(-) 1,948,500원...축산업 감면세액
 $(3,897,000 \times \frac{16,500,000}{16,500,000} \times 50\%)$

④ 1,948,500원...결정세액

(-) 1,080,000원...기납부세액 (1기 중간예납 540,000원 2기 중간예납 540,000원)

⑤ 868,500원...차감자진납부할 세액

상기의 경우는 간이장부의무 해당자로 기장을 했을 경우는 산출세액에서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 × $\frac{\text{기장소득}}{\text{종합소득}} \times 10\%$)

(389,700원 × $\frac{16,500,000}{16,500,000} \times 10\%$)을 더 공제하

여 1,558,800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법 제73 조 기장세액공제)

나) 방위세액의 계산

① 방위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 년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840만원 이하자는 10%, 840만원 초과자 20%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소득세가 비과세 감면되는 경우 (축산업감면해당)는 상기세율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②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840 만원을 초과하여 세율이 20%가 되어 방위세로 인하여 순소득(가처분소득)이 840만원때의 가치

분 소득보다 미달될때는 방위세 산출세액에서 차액(한계소득세액 공제액)만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840만원때의 가처분소득 - 과세표준 840만원 초과시의 가처분소득 = 한계소득세액공제.

$$\text{가처분 소득} = \text{과세표준} \begin{cases} \text{소득세 산출세액} \\ \text{방위세} \end{cases}$$

(계산내역)

- 7. 소득세 과세분과표 1,948,500원
 - (×) 20% 389,700원...㉠
- 소득세 감면분과표 1,948,50 원
 - (×) 30% 584,550원...㉡

- L. 방위세산출세액 ㉠ + ㉡ 974,250원
- C. 한계 소득세액공제 해당없음

㉡. 기납부세액(-) 216,000원...1기 중간
 예납 108,000원
 2기중간예 납108,000원

㉢. 차감방위세자진납부할세액 758,250원
 ※방위세의 경우도 기장을 했을 경우는 소득세 과세분 결정세액이 1,558,800원이므로 위 ① 소득세 과세분의 과표가 1,558,800원이 되어 산출세액이 적게 계산이 된다.

※소득세 추가조사 결정을 받을 사람은 관할 세무서에 가면 본인의 81년도중 업종별총 수입금액과 결정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V) 기타 참고사항

1. 축산업관련 개정세법 개요 (부분적으로 요점만 발췌)

항 목	종 전	개정 (82년 1월 1일 이후)
1. 소득세법		
1) 소득공제	① 기초공제 300,000원 ② 배우자공제 300,000원 ③ 부양가족공제 1인당 240,000 ④ 장애인공제 1인당 120,000원	① 동일 ② 420,000원(공제액인상) ③ 동일 ④ 1인당 300,000원(공제액인상)
2) 기장의무신고기준 인상(법184조)	① 복식기장의무자 연간 수입금액 2억원 이상자 ② 간이장부 의무자 연간 수입금액 6천만원이상자	① 2억 5천만원이상자 (5천만원 인상) ② 8천만원 이상자 (2천만원 인상)
3) 납세지 지정제도개선 (법12조 및 영24조의 2)	원칙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소득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이나 특별한 경우 세무당국에서 지정	원칙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지정하나 「간이장부 의무자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소득(축산업 단일소득해당) 또는 부동산 소득만이 있는 단일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당해년도분을 당해년도 10월~12월까지 자기사업장을(예를들면 사업자 등록번호상의 목장소재지)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 신청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소득세 관할 세무서가 될 수 있음」

		(예를들어 82. 1~12기간분은 82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지정신청)
2. 조세감면 규제법 관련 1) 축산업에 대한 중요산업 감면제도가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법 제37조)	축산업 개시일이 속하는 년도와 그후 3년간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법인세 100%감면 다음 2년간은 50%감면 (세액공제로 구법 4조의 8 제 1항 1조를 택할 경우)	①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년도와 그 다음년도부터 5년동안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50% 소득공제 ② 기존 사업자가 구법에 의한 잔존 감면기간이 남아있을 경우는 그 잔존기간에 한하여 개정세법을 적용함. 예) 1981년 신규사업자 경우 81년도는 소득세 법인세 100%감면 82년도~86년도까지는 축산소득금액에서 50% 공제함.
2) 기업합리화 적립금등	①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이나 감면 소득금액 또는 세액 상당액을 의무적으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 ② 개인 법인모두 공제감면받은 소득금액이나 세액상당액을(기업합리화 적립금) 2년 이내에 1년 6개월이상 장기차입금등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사업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에 5년내 사용되어야 됨. ③ ①과 ②의 조건 이행되지 아니하면 감면 세액추징(이자자산추징)	① 법인기업에 한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세액상당액으로 계산 적립하고 동 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이나 자본전입에 충당만 하여야 함. ② 개인 기업자는 2년내에 1년 6개월 이상의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5년내에 고유 사업용 자산의 투자에 사용되어야 함. ③ ①과②의 조건을 이행치 않으면 감면공제 세액에 대하여 연리 36.5%로 이자가산추징
3) 소득세 기본세율표 변경	별도내역 참조	

2. 소득표준율대비 및 농가부업적인 축산업의 범위

1) 소득표준율 대비표

종 목	수입금액	81년도	80년도	비 고
낙농및육우	1 억원미만 1 억원이상	8 % 8.8%	9 %	젖소 및 젖양을 기르는 낙농업, 비육우
양 돈	1 억원미만 1 억원이상	10% 11%	10%	
양 봉	1 억원미만 1 억원이상	18% 19%	18%	
양 계	1 억원미만 1 억원이상	10% 11%	11%	

사	1억원미만 1억원이상	14.5% 15.9%	12.5%	80년도는 기타로 12.5% 이었음.
기	1억원미만 1억원이상	12.5% 13.7%	12.5%	누에치기, 오리, 거위, 칠면조등 가금사육업포함. 애완용등 상기이외의 가축 사육업등

2) 농가부업적 축산업범위(소득세법 시행령 6조의 2) : 농민이 농가부업적으로 아래와 같은 규모로 축산업을 하는 경우는 면제가 된다.

가축별	규 모	비	고	가축별	규 모
젖 소	10마리	성축을 기준으로 하고 육성우의 경우 2마리를 1마리로계산		토 끼	1,000마리
소	20마리			닭	1,000 수
돼 지	100마리			오 리	1,000 수
산 양	100마리				
면 양	100마리				

- 1) 상기범위이외 기타의 경우는 연간 소득금액 186만원까지 명세임.
- 2)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재 기준으로 함.

종합소득세세율표

81년도			82년도시행(개정)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120 만이하	6 %		120 만원이하	6 %	
120 만원초과	8 %	24,000 원	120 만원초과	7 %	12,000 원
180 "	10%	60,000 "	180 "	8 "	30,000 "
240 "	12%	108,000 "	240 "	10 "	78,000 "
300 "	15%	198,000 "	300 "	12 "	138,000 "
360 "	18%	306,000 "	390 "	15 "	255,000 "
450 "	21%	441,000 "	480 "	18 "	399,000 "
540 "	24%	603,000 "	600 "	22 "	639,000 "
690 "	28%	879,000 "	840 "	26 "	975,000 "
840 "	32%	1,215,000 "	1,140 "	30 "	1,431,000 "
1,080 "	36%	1,647,000 "	1,500 "	34 "	2,031,000 "
1,320 "	40%	2,175,000 "	1,900 "	38 "	2,791,000 "
1,300 "	44%	2,895,000 "	2,400 "	42 "	3,751,000 "
2,400 "	43%	3,855,000 "	3,000 "	46 "	4,951,000 "
3,300 "	52%	5,175,000 "	3,800 "	50 "	6,471,000 "
4,500 "	56%	6,975,000 "	4,800 "	55 "	8,871,000 "
6,000 "	62%	10,575,000 "	6,000 "	60 "	11,871,000 "

적용예시(81년도) : 과세표준이 7,450,000원 경우

$$7,450,000 \times 28\% - 879,000 (\text{누진공제액}) = 1,207,000 \text{원} \dots \text{종합소득세 산출세액}$$